

	산업체위탁생 전공과목 이수인정평가 규정	제 정 일	2000. 3.28
		개 정 일	2021. 4.15
		개정차수	4차
		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본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262호 8항에 의한 전문대학 산업체위탁생 교육시행 지침의 전공과목 이수 인정에 따른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성적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을 기하고,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교과목 이수인정 범위) 교과목 이수는 동서울대학교에서 정한 산업체 위탁생 교육과정에 의하되, 다음 각 호의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262호 8항에 의해 해당 학부(과) 교수회의 심사에 의하여 학부(과)장의 제청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졸업학점의 20% 범위 내에서 학기당 5학점까지 교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09. 2.13)

1. 공인된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동일분야 전공관련 교과목 이수
2. 산업체내 연구소 및 사내훈련기관에 의한 전공분야 교과목의 이수 및 일정기간의 연수 및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
3.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관에 의한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(전문대학부설 특별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등 포함)
4. 기능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 이수
5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의 해당 시험과목 중 전공 관련 시험과목
6. 동일직무에 일정기간 근무한 전공 관련 경력 (실험, 실습 관련 교과목에 한함)

제 3조 (평가방법) 상기 제2조의 각 호 교과목에 대한 세부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평가 기준에 의한다.

1. 제2조의 1호~4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전적대학 및 관련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동일하게 인정한다.
2. 제2조의 5호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이에 유사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관련성 정도와 자격증의 중요성에 따라서 B° 학점에서 A+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3. 제2조의 6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직무의 관련성 정도와 직무 근무년수에 따라 평가는 다음 내용을 평가에 반영한다.
 - 가. 교과목에 관련하여 학부(과)에서 부과하는 과제물(작품포함)
 - 나. 학생의 평소 수업태도와 출석률
 - 다.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성적평가에서 제외한다.

제 4조 (평가교수) 당해 학부(과) 해당 교과목 교수가 평가교수가 되어, 제3조 2호와 3호에 대해 성적을 평가한다.

제 5조 (증빙자료 첨부) 제3조 1호에 의해 전공과목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적대학 및 관련기관 발행의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전공과목 이수 인정원(별지 제1호 서식)을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학기 초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 4.15)

제 6조 (과제물 보관) 학부(과)에서 부과한 과제물의 레포트(작품 포함)는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보관한다.

제 7조 (심의) 이수인정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부여한다. (신설
2014. 5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 서식】

전공과목 이수 인정원